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9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 의 자 : 이주영 · 이준석 · 유용원
안철수 · 윤재옥 · 천하람
황명선 · 박홍배 · 채현일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인해, 디지털 역량은 이제 개인의 사회 참여 및 경제 활동의 필수 조건이 되었음.

공공 서비스, 금융, 교육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한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해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딥페이크 오디오를 30%도 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대응 능력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특히, 국내 60대 이상의 경우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역량이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가 압도적임.

이에 우선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등).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디지털 문해교육”이란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 디지털 정보의 이해 및 분석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디지털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디지털 문해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문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의2. “디지털 문해교육”이란</u> <u>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u> <u>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디</u> <u>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 디</u> <u>지털 정보의 이해 및 분석능</u> <u>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u> <u>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u> <u>한다.</u>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디지털 문해교육 진흥에 관</u> <u>한 사항</u>
<u>7. (생 략)</u>	<u>8. (현행 제7호와 같음)</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39조의3(디지털 문해교육의 진</u>

홍)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문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u>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u>
--	-------------------------------